##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51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이종배·김예지·성일종

박형수 · 김소희 · 진종오

박덕흠 • 김성원 • 조배숙

엄태영 · 이종욱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이고 피해규모는 100조원에 달하여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등과 상관없이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수준 강화가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법률 제 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제36조(벌칙) 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상	<u>5년</u>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다.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		
	<u>당하는</u>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②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5</u>	<u>-</u>		
<u>억원 이하의</u>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u>.</u>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	③		
•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0억원 이하의</u> 벌금 에 처한다.

그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 또는 그 대상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④ ~ ⑧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